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합니다.)은 아래 열거한 보장 특별약관(이하 '해당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이 부가된 유효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해당 특별약관〉	
구 분	특약명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사망(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 II (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 II (비운전중)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비운전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2조 (피해자의 정의)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의 중과실(피해자)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에서 피해자라 함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의 판결문, 경찰의 공소장 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서 확인되는 '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제3조 (중과실사고의 정의)

- ①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과실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
단,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실사고'로 봅니다.
 1. [별표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의 가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가해자가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2. 가해자가 사고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1항 제1호의 사고 중 단서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고
4.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추가 세부규정)

제3조(중과실사고의 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었으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되지 않은 경우라도 적용대상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 [별표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정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상기와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